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

2. 조치일 : 2023. 11. 1.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양도 사실 통지업무 관리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모든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 및 채권 매입기관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3.13.~2022.7.27. 기간 중 2,335건(233억 1백만원)의 채권을 A社 등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인 명의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리하여 통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596건, 52억19백만원), 통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1,739건, 180억82백만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양도 사실 통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활동 기록관리 및 점검 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거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등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추심하는 경우 채권관리시스템에 추심활동이 기록되지 않거나 통화내용 녹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추심활동 기록 내실화를 위하여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제반 추심활동에 대한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